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1991. 11. 01. 제정) (2004. 11. 01. 개정)
(2006. 06. 05. 개정) (2008. 12. 19. 개정)
(2010. 02. 11. 개정) (2013. 01. 31. 개정)
(2013. 11. 14. 개정) (2014. 07. 30. 개정)
(2016. 12. 8. 개정) (2018. 10. 10. 개정)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6조에 따라 생활관생이 입실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실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분관)(이하“생활관(분관)”이라 한다)에 입실한 전 생활관생(이하 “관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호실배정) ①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의 호실과 룸메이트 배정은 공주대학교 포털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관생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생생활관(분관)장(이하“생활관(분관)장”이라 한다)이 호실과 룸메이트를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장애인 룸메이트도우미
2. 외국인과 외국인 룸메이트도우미
3. 생활관(분관) 관생자치회 임원
4. 그 밖에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일과) 생활관(분관)의 구체적인 일과시간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전기사용) ① 전기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② 허용되는 전기제품은 컴퓨터, 카세트, 소형 라디오, 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충전기, 전기스탠드 등 화재위험 및 전력사용량이 적은 것에 한한다.

③ 상기 이외의 전기제품은 반입을 일체 금하며 사용 및 발견 시는 회수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④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관(분관)장이 결정한다.

제6조(변상)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인원파악) 정기 또는 수시로 인원파악을 실시한다.

제8조(행사 및 집회) 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생활관(분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행동은 금한다.

제9조(공고문 게시 및 방송) ① 생활관(분관)장의 공고문 게시는 모든 관생이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고문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귀가, 외박) 귀가 및 외박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외박계

를 작성하고 귀사일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예절) ① 직원과 생활지도사는 관생의 상담에 응한다.

② 모든 관생은 생활관(분관) 직원과 생활지도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공기물 및 집기의 무단이동, 가공, 파손행위
2.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의 사용
3. 음주, 도박, 폭력, 절도행위
4. 교직원에게 무례한 불손행위
5. 학칙 제106조 (학생활동의 제한)에 위배하는 행위
6.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불온 유인물 배포행위
7. 관내에서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
8. 외부인(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관생 포함)을 관내에 숙박 시키거나 무단 대동 입실하는 행위.
9. 관내기물 및 시설물을 손상 파괴하는 행위
10. 관내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11. 관내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12.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13. 배정된 호실을 관생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4. 삭제
15. 무단 외박하는 행위
16. 그 밖에 관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13조(퇴실) ① 퇴실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7일 이전에 퇴실원(소정양식)을 제출하여 생활관(분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벌점에 의한 퇴실처분인 경우에는 익일 퇴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퇴실 시에는 열쇠(출입카드) 및 기타 지급품을 반환하고, 미반납 시에는 실비 변상해야한다.

③ 퇴실시 개인소유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호실은 입실 전 상태로 원상회복해야한다.

제14조(포상 및 상점) ① 생활관(분관)장은 직원이 추천한 관생 중 생활관(분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그 상점으로 벌점을 감면할 수 있다. 상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벌점) 생활관(분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경고처분
   가. 벌점의 합이 5점 이상인 경우
   나. 1회 범칙 행위라도 그 벌점이 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실처분
   가. 생활관 규정 제21조에 열거한 퇴실 처분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경우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10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고처분 후 벌점의 합이 10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16조(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구분하며, 입실 일부터 퇴실 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활관비는 은행창구납부,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결재, 현금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외국인유학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실 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지정된 입실일 1일전 까지는 전액 환불하며, 입실일 이후 중도 퇴실에 따른 환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불할 수 있다.

1. 공식적인 교외교육활동(대회참가, 합숙훈련, 교육실습, 인턴십, 학회, 봉사활동, 학과 졸업여행 및 MT 등)으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단, 학과수업 및 조기종강 제외>
2. 질병 또는 입원의 사유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3. 경조사(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에 의한 사유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⑤ 결식비는 결식기간 동안의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결식비 환불 요청서는 반드시 결식 3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결식 3일 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① 관생은 원활한 공동체 생활 및 생활관(분관) 운영,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설문조사・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분관)장은 관생의 설문조사・교육・훈련 참여 실적에 따라 상점 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2016.12. 8.)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 .)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점 기준

연 번	내 용	상 점
1	생활관내 공공의 위험,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및 신고를 한 경우	11
2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현한 경우	5
3	관생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경우 생활관 건물내 무단출입한 외부인을 신고한 행위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소방훈련, 오리엔테이션 등)	3
4	생활관의 봉사활동 참여 행위(필요시 생활관에서 참가자 수시 모집 예정, 2시간당 1점) 생활관 호실내 청소 및 정리정돈을 잘하는 행위 장애학우에게 도움을 준 행위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2
5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5

〈별표 2〉 벌점 기준

연번	내 용	벌 점
1	외부인 무단대동 및 출입(타생활관생도 외부인에 포함, 방조자 동일 벌점 부과)	8
2	부당한 방법으로 출입 시도 및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는 행위	8
3	고의로 네트워크 환경을 유해하는 행위(바이러스 유포,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자료를 열람,삭제하는 행위 등)	8
4	허가되지 않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 - 허용되는 전기제품은 카세트, 라디오, 전기면도기,스탠드, 드라이기, 충전기, 컴퓨터, 프린트기, 고데기, 청소기에 한하며 추가품목은 생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8
5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 훼손 정도에 따라 실비 변상 조치	6
6	관생 이외의 자(타 생활관생 포함)에게 무단 급식 제공 - 식기 또는 음식물 반출 행위 포함(단, 후식 제외), 본인 생활관 이외의 식당에서 허가되지 않은 식사를 하는 행위 포함 * 제공받은 자가 비관생일 경우: 1식 식권판매가 * 10배 가격 벌금 조치	6
7	출입확인 불이행 - 생활관 출입 시 손등혈관인식시스템(출입카드)에 본인의 출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 예: 타인 출입 또는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 본인의 출입확인절차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	6
8	호실내 PC 또는 에어컨 등 각종 전자기기를 켜놓고 외출하는 행위	6
9	호실 키(카드) 분실 및 호실 출입비밀번호 유출 행위	6
10	관내 주류반입 및 음주 행위	6
11	생활관 소방훈련(화재대피훈련) 미참석	6
12	폐문시간 이후 출입 또는 문 개방	4
13	생활관내 및 생활관 일대에서 학습,숙면 등을 방해하는 소음 · 소란 행위	4
14	호실 청소상태 불량 (해당 세대 혹은 호실 내 전원 벌점부과)	4
15	기타 공동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무단 외박, 애완동물 사육, 관생실 무단변경, 지급물품 미반납, 쓰레기 무단투기(관내 · 외), 호실내 실외화 착용, 부재시 소등하지 않는 행위, 관내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행위, 개인의 사물을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 개별 면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행위,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미참석, 생활관 설문조사 미참여 등	2

<별표 3> 중도 퇴실자 환불 기준

식비		관리비	
기간	환불액	기간	환불액
개관일수 3/4선 이전	1일 식비 단가×잔여일수-7일분 공제	개관일수 3/4선 이전	1일 관리비 단가×잔여일수-14일분 공제
개관일수 3/4선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개관일수 3/4선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